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8. 17 선고 2021가단55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7지분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4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2018.

3.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4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행은 2016. 6. 21. D에게 10,000,000원을 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금리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9. 5. 17. 원고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를 통하여 양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3. 26.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962,941원과 그중 7,233,033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17 판결).

나. F은 2002. 12. 7. 사망하였고 피고들, D, G, H, I, J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D는 2018. 3.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1/7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고들과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명의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가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은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D가 대출받은 날인 2016. 6. 21.부터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은 날인 2020. 3. 26.까지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

별지